

2005년도 노동부 산업안전보건정책방향

목 표

- ◆ 효과적인 재해예방체제 확립 및 쾌적한 작업환경 조성으로 근로자 안전과 건강의 유지·증진
 - 재해율 : 0.74%,
 - 사망만인율 : 1.20

요 약

1. 산업재해 취약부문 재해예방역량 제고
2. 사망재해 위험 사업장 중점관리
3. 작업환경관리와 근로자 건강증진 활성화
4. 노·사의 안전의식 및 자율적 예방 활동 강화

1. 산업재해 취약부문 재해예방역량 제고

가. 산업재해 취약사업장 안전보건관리 강화

(1) 재해다발 사업장 『안전보건개선계획』 수립·시행

동종 업종 규모별 평균재해율 초과 사업장(사업주의 안전·보건상 조치가 필요한 재해가 원칙적으로 2건 이상 발생한 사업장 중에서 선정) 및 조사대상 중대재해가 연간 2건 이상 발생한 사업장, 작업환경측정결과 소음이 90dB(A)를 초과한 공정 또는 설비를 보유한 사업장으로서 최근 1년 이내에 직업병자(소음성난청) 또는 직업병유소견자가 발생한 사업장, 작업환경측정결과 분진 또는 화학적 유해인자가 최근 2년간 2회 이상 노출기준을 초과한 공정 또는 설비를 보유한 사업장, 화학적 유해인자에 기인하여 직업병 또는 직업병 유소견자가 발생한 사업장, 기타 사회적 물의를 야기한 사업장 등 지방관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

업을 대상으로 안전보건개선계획을 수립·시행한다.

(2) 영세 소규모 사업장 집중지원

(가) 『CLEAN 사업』의 지속 추진

50인 미만 소규모 사업장을 『CLEAN 사업장』으로 조성토록 지원하고 32,000개소에 대해 안전보건관리지원을 실시한다.

(나) 공장설립 단계별 안전보건 기술지원

소규모 신규 설립 사업장에 대한 안전보건 기술지원체계를 마련하여 공장설립 초기부터 체계적으로 관리한다.

(3) 모기업-협력업체 재해예방 파트너십 협약지원

안전관리 능력이 우수한 모기업이 협력업체의

안전보건활동을 관리·지원토록 기업과 안전공단 간 모기업-협력업체 재해예방 파트너십 협약 체결·시행을 지원하고 협약체결 기업에 대해 협력업체 지원활동사항을 정기적으로 평가하여 홍보·포상 등 각종 인센티브를 제공한다.

나. 위험·기계기구 등의 근원적 안전성 확보

(1) 위험기계·기구 등에 대한 안전조치 확행

프레스를 5대 이상 보유한 사업장으로 2004년까지 최근 3년간 프레스에 의한 수직절단 재해 1건 이상 발생 사업장이나 리프트 및 타워크레인 3대 이상 보유 건설현장 등 위험기계·기구를 다수 보유하고 있는 사업장을 대상으로 특별점검을 실시하며, 각종 사업장 지도·감독 및 재해조사시 반드시 자체검사 이행 여부를 확인하고 지정검사기관에 대해서는 년2회 이상 지도·감독을 실시하며 영세 사업장의 기계·기구에 의한 재해를 예방하기 위해서 5인 미만 사업장에 대한 국고지원 자체검사를 50인 이하 취약 제조업 사업장으로 확대하여 지원한다.

(2) 불량 방호장치 및 보호구 근절

압력용기, 크레인(대여업체 포함), 화물용승강기 제조업체와 이를 사용하는 건설현장, 기계·기구 제조업 및 화학공장을 대상으로 방호장치 설치 및 사용여부에 대해 집중점검을 실시하며, 보호구·방호장치 제조·수입 및 판매업체를 대상으로는 보호구·방호장치 수거검정을 강화(미검정품 제조·유통 여부 점검 병행)한다.

(3) 검사·검정기준의 선진화

보호구·방호장치 제조업체에서 노동부장관이 지정하는 공인시험기관에서 제품에 대한 시험을 받고 그 성적서를 제출할 경우 당해 시험항목과 동일한 항목에 대한 검정을 면제하고 안전인증제

의 국제화 및 선진국과의 FTA 등에 대비하여 검사·검정기준을 선진국 수준으로 상향 조정한다.

다. 산업재해 취약계층 근로자 보호 강화

(1) 산재취약 사업장 안전교육 강화

50인 미만 위험업종 사업주, 임원, 공장장, 현장 소장 등 영세 소규모 사업주에 대한 교육을 실시하고, 건설업, 항만하역업, 석유화학업, 고층건물 관리업 등 산업재해 위험업종 및 프레스, 크레인, 지게차 운전 등의 위험요인(특히 사망재해 취약업종·요인)을 선정, 근로자 대상 안전보건 집중교육을 실시하며 지정교육기관에 대해서는 상·하반기 각1회 이상 지도·감독을 실시한다.

(2) 외국인 근로자 안전보건 관리

외국인 근로자 재해발생 업체 사업주 및 외국인 근로자 재해다발업종의 외국인 근로자 고용 사업주를 대상으로 외국인 고용 사업주 교육을 실시하고, 사업장에 취업중인 외국인 근로자를 대상으로는 외국인 근로자교육을 실시하며, 외국인 근로자 재해발생 사업장 및 외국인 근로자 다수고용 사업장은 지도감독을 실시하고, 외국인 근로자용 시청각 교육교재 등을 지속적으로 개발·보급한다.

(3) 비정규직 근로자 등 안전보건관리 점검 강화

도급업체[용역, 협력업체, 사내하청(소사장제 포함)] 중심으로 비정규직 근로자 다수사용 사업장에 대한 실태조사를 상·하반기 각1회 실시하고 특히 근로자의 입·이직이 빈번한 업종에 대한 채용시교육, 특별교육 등 근로자 법정 안전교육 실시 여부를 점검한다.

(4) 취약계층 근로자 건강관리 강화

여성 근로자 다수고용 및 내분기계 장애물질 취

급 사업장을 대상으로 여성의 신체적·생리적 특성 등을 고려한 보건관리 기술지원으로 여성 근로자 건강보호를 내실화하고 고령화 사회에 대비, 고령 근로자의 육체적·정신적 능력을 고려한 건강관리사업을 확대한다.

라. 재해예방전문기관 운영 내실화

(1) 안전·보건관리대행기관 운영 내실화

(가) 안전·보건관리대행기관 업무수행 능력 평가

전국 안전·보건관리대행기관을 대상으로 평가팀을 구성, 평가표에 의거 평가를 실시하고 우수 대행기관에 대해 감독 면제 등 인센티브를 부여한 반면 불량 대행기관에 대하여는 특별감독 등 중점 관리한다.

(나) 안전·보건관리대행기관 업무수행실태 특별점검

본부 주관으로 점검팀을 구성하여 대행계약 체결 사업장에 대한 실태조사를 실시하고 안전·보건관리대행기관의 지도시 활용한다.

(다) 안전·보건관리대행기관 지도·감독 철저
 안전보건관리대행기관(안전 : 66개소, 보건 : 83개소)에 대해서 년 2회 이상 지도·감독을 실시하고, 대행사업장(10%)에 대해서는 연중 지속적으로 서류 및 현장점검을 실시한다.

(2) 재해예방전문지도기관 운영 내실화

(가) 지도기관 업무수행 능력 평가

전국 지도기관을 대상으로 평가팀을 구성, 평가표에 의거 평가를 실시하고 우수 지도기관에 대해 감독 면제 등 인센티브를 부여한 반면 불량 대행기관에 대하여는 특별감독 등 중점 관리한다.

(나) 지도기관 업무수행실태 점검

4월, 10월에 지도기관에 대해 인력·시설기준 준수 여부, 기술지도 횡수기준 준수 및 실제 방문 지도 여부, 기술지도 부실수행 또는 해태 여부 등에 대해 실태조사를 실시한다.

(다) 지도기관 지도사업장 점검

건설 기술지도 현장(2%)에 대해서는 연중 지속적으로 서류 및 현장점검을 실시한다.

(라) 지도요원 전문성 제고

지도업무 종사자의 전문성 제고로 기술지도 서비스의 질 향상을 도모하기 위하여 지도기관 자율적으로 기술정보 교류를 위한 정기 세미나 또는 지도사례 발표회 등을 개최토록 유도하고 기술지도 정보교류 등을 통한 지도요원 전문성 향상을 위해 인터넷 홈페이지를 개설·운영토록 지도한다.

2. 사망재해 위험 사업장 중점관리

가. 사망재해 발생 사업장 제재 및 예방 활동 강화

(1) 조사대상 『사망재해』 발생사업장 조사 철저

2005년도 중 안전보건조치 소홀로 인한 사망재해(협력업체 재해 포함) 발생 사업장을 대상으로 법 위반사실에 대해서 엄격 적용하고 과태료 등 관련규정 위반여부에 대한 조사 누락여부 철저 확인 등으로 과태료 부과를 확행한다.

(2) 『사망재해』 발생사업장 단계적 조치 강화

년도 중 안전보건조치 소홀로 인한 사망재해(협력업체 재해 포함) 발생 사업장 중 1건 발생시 안전진단, 안전보건개선계획수립 명령 등을 통한 안전관리 개선을 유도하고 2건 발생시 지방관서 주

관 안전보건 감독을 실시하며 3건(10,000인 이상 4건) 이상 발생시 지방청 주관의 안전보건감독의 실시 및 시행규칙 제15조에 의한 안전 또는 보건 관리자 증원을 명령한다.

※ 상시 근로자수 50인 이상 또는 공사금액 50억원 이상 사업장으로서 동시 2명 이상 사망 또는 폭발·붕괴 사고의 경우에는 반드시 진단명령

(3) 『사망재해』 발생사업장 행정·사법 조치

사업주의 고의적 법 위반에 의한 사망재해 발생 시 기중 처벌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 연도 중 3건(건설업 2건) 이상 발생 또는 동시 사망자 2명 이상 발생 사업장의 법 위반자에 대해서는 구속수사를 요청한다. 또한 법 제23조·제24조 또는 제29조의 규정 위반으로 동시에 3인 이상 근로자가 사망하는 산업재해가 발생한 건설업체에 대하여는 입찰참가 제한 또는 영업정지 등을 요청한다.

(4) 『사망재해』 취약 유형별 예방활동 활성화 (가) 업종별 사망재해 예방대책 마련

안전공단의 재해조사보고서를 토대로 사망재해 발생유형별 원인분석을 통한 예방대책을 수립하고 패트를 점검, 조선업 산재취약 요인 점검 등 업종별 점검사업과 연계하여 예방대책을 시행하며, 노동부, 안전공단, 재해예방단체 전문가로 『사망재해 예방대책 T/F』를 구성·운영한다.

(나) 사망재해 취약 사업장 점검

사망재해 취약유형(협착·전도·감전·충돌) 재해 발생 가능 사업장 및 사망재해 취약업종 등 사망재해 발생현황을 면밀히 분석하여 사망사고 다발 업종 및 유형을 선정, 집중점검을 실시한다.

(다) 사망재해 다발 업종·유형별 예방기법 개발·보급

건설업, 제조업 세부업종(조선업, 화학제품제조업, 금속제품제조업 등), 기타 업종(항만하역업, 고층건물관리업 등) 및 추락, 협착, 낙하·비래, 전도, 산소결핍, 중독 등 사망재해 다발 업종 및 유형별로 예방기법을 개발·보급한다.

(라) 사망재해 재발방지 교육

조사대상 사망재해 발생사업장을 대상으로 상·하반기 각 1회씩 재발 방지교육을 실시하고 교육 불참 사업장은 점검대상 사업장에 우선 선정한다.

(마) 사망재해 재발방지계획 수립 지도

사망재해 발생사업장에 대해 당해 사업장의 사망재해 재발방지계획을 수립토록 적극 지도·확인한다.

나. 건설재해 예방관리 강화

(1) 대형 건설현장 차등관리 강화

(가) 건설업체 재해율 조사 및 조치

시공능력평가액 순위 1,000대 건설업체를 대상으로 업체별 재해자수를 조사하고 재해율에 따라 입찰참가자격사전심사(PQ)시 가·감점(±2)토록 요청하고 시공능력평가지도 신인도 평가액 감액을 요청(최고 5%)하는 등 차등 관리한다.

(나) SOC시설 건설현장 차등관리 확대

공사금액 100억원 이상의 지하철, 고속철도, 발전소, 항만, 고속도로, 일반국도 및 댐 등 7개 분야 SOC시설 건설현장은 현장별 2005년 상·하반기 산업재해 현황과 공사실적액을 조사하여 반기별 재해율에 따라 3등급으로 구분, 차등 관리한다.

구분	재해율	조치사항
청색	3분기 연속 무재해	자율 안전관리
황색	동종현장 평균환산재해율의 1.5배 미만	안전공단기술지원
적색	동종현장 평균환산재해율의 1.5배 이상	본사 경고 지방관서 현장 감독 실시

(2) 취약시기 건설현장 점검 강화

재해율 우수업체를 제외한 업체가 시공하는 현장, SOC 시설분류 결과 황색·적색 현장, 안전보조 조치 소홀로 인한 산업재해 발생현장, 산업재해를 은폐한 적이 있거나 은폐 신고가 있는 현장, 위험상황신고 접수 현장에 해당하는 현장을 선정하되 시기별로 다음 현장을 우선 선정하여 취약시기별 위험요인, 안전관리조직, 교육,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사용 등 전반적인 안전관리 상태에 대하여 점검 실시한다.

- 해빙기 : 지반 및 토사붕괴의 위험이 있는 현장
- 장마철 : 침수, 붕괴 및 감전위험이 있는 현장
- 동절기 : 동파, 화재 및 폭발위험이 있는 현장

(3) 안전관리 취약 중소규모 건설현장 집중 관리

(가) 건설안전 패트롤 점검 확대

공사금액 100억원 미만 건설현장으로써 재해율 불량 건설업체(명단 발표 후 1년 이내) 시공현장, 재해다발 공사 규모 및 종류 등에 해당하는 현장, 추락·낙하·붕괴 등 반복형 산업재해발생 위험이 높아 점검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현장 등을 대상으로 2월, 6월, 12월을 제외한 매월 건설안전

패트롤 점검을 실시하며 추락·낙하·비래·붕괴 등 반복형 산업재해 위험요인 중심으로 안전난간 등 8대 가시시설 설치상태를 집중 점검한다.

(나) 영세 건설현장 안전관리 기술지원

공사금액 3억원(전기·정보통신공사는 1억원) 미만의 건설현장은 8대 가시시설 설치상태에 대한 집중 기술지도 및 교육, 기술자료 등의 무료 지원을 실시한다.



(4) 건설안전제도의 선진화

(가) 산업안전보건관리비 현장 적용성 제고

산업안전보건관리비의 사용항목별 사용한도, 공사진척별 사용기준 폐지 등 산업안전보건관리비의 합리적 개선을 통한 현장 적용성을 제고한다.

(나) 타워크레인 설치·해체 및 운전기준 강화

사전 작업계획서 작성 의무화, 풍속에 따른 운전작업중지 기준을 마련하고 일정 자격 또는 경험이 있는 자에 한해 작업에 종사토록 유해·위험작업 취업제한 대상에 포함시키며 타워크레인 운전기능사 자격기준을 신설하는 등 기준을 강화한다.

(다) 유해·위험방지계획서 운영 내실화

유해·위험방지계획서의 심사·확인이 면제되는 자율안전관리업체 지정대상 업체를 축소(공사 실적액 순위 300대 → 200대로 조정)하고 건설업 평균재해율 이하의 안전관리 우수업체에 대한 유해위험방지계획서 확인주기를 완화한다.

다. 조선업 안전보건관리 강화

(1) 조선업체 안전보건관리 실태조사 및 차등관리

상시 근로자수 100인 이상 선박 건조 및 수리업체를 대상으로 산재발생 현황 및 안전보건활동 수행실태를 조사·평가하여 평가결과를 토대로 조사대상 업체를 청색·황색·적색 3개 등급으로 구분, 차등 관리한다.

(2) 조선업 산재 취약요인 일제점검

상시 근로자수 100인 이상인 사업장으로써 등급분류결과 황색·적색 사업장 및 상시 근로자수 50인 이상 100인 미만인 사업장으로써 2004년 재해율이 동종업종 평균재해율 이상인 사업장, 상시 근로자수 50인 미만 사업장 중 2004년에 재해자가 2명 이상 발생한 사업장을 대상으로 3/4분기 중에 일제점검을 실시한다.

※ 안전보건개선계획 수립 명령 사업장은 제외

(3) 관리감독자 특별교육

9대 대형 조선업체 『현대중공업(주), 대우조선해양(주), 삼성중공업(주), 현대삼호중공업(주), 현대미포조선(주), STX조선(주), (주)한진중공업, (주)신아, 대선조선(주)』 현장 관리감독자를 대상으로 특별교육을 실시한다.

(4) 조선업 협력업체 사업주 교육

9대 조선업체 협력업체 사업주를 대상으로 상반기중에 중대재해 사례 및 재해예방대책 등 사업주

의 안전의식을 고취시킬 수 있는 실질적인 내용을 선정하여 교육을 실시한다.

(5) 조선업 협력업체 근로자 교육

9대 조선사 협력업체 근로자에게 용접, 도장, 연마, 고소작업 등 분야별 교육을 실시한 후, 교육 이수자 명단을 해당 모기업에 통보하고 모기업 안전부서에서는 협력업체 근로자가 작업개시 전에 반드시 해당 분야의 교육이수 여부를 확인하고 교육 미이수자에 대해서는 안전공단의 협조를 받아 자체적으로 교육토록 지도한다.

(6) 『조선업 산재예방협의회』 운영

조선업체간 안전보건협의회의 구성·운영을 통해 재해예방정보의 공유 및 업체의 안전관리수준 향상을 유도하기 위하여 대형 조선업체 9개소의 노·사, 학계 및 노동부(안전공단) 관계자로 구성된 조선업 산재예방 협의회를 운영한다.

라. 중대산업사고 예방기반 확충

(1) 『중대산업사고 예방센터』 설치·운영

중대산업사고 예방업무를 집중 담당하는 체제를 구축하여 법 집행 및 기술지원 업무를 유기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화학공장이 밀집된 공단지역을 관할하는 지방관서 및 안전공단 지도원 소속으로 「중대산업사고 예방센터」를 설치·운영한다. 또한 관할지역은 예방센터가 설치된 지방관서의 관할 구역내 소재 화학공장에 대한 중대산업사고 관련 업무는 당해 예방센터에서 담당하고 지원구역에 소재한 화학공장은 사업장 관할 지방관서를 해당 예방센터에서 지원하는 방식으로 운영한다.

※ 울산·안산·여수·천안지역 관할 각 지방관서 및 안전공단 지도원 소속으로 하되, 접근성 확보를 위해 공단 근거리 지역에 설치

구 분	관할구역	지원구역
울산중대산업 사고예방센터	울산사무소/ 울산지도원 관내	부산·대구· 경상권
안산중대산업 사고예방센터	안산사무소/ 안산지도원 관내	서울·경기· 인천·강원
여수중대산업 사고예방센터	여수사무소/ 여수지도원 관내	광주·전라권
천안중대산업 사고예방센터	천안사무소/ 천안지도원 관내	대전·충청권

(2) 『중대산업사고 예방센터』 홈페이지 제작·운영

안전공단에서 운영 중인 KOSHA-Net 서버를 활용하여 인터넷을 통해 중소 화학공장 등 화학물질 취급 사업장의 민원이 해소될 수 있도록 활용성 높은 콘텐츠를 개발하고 화학사고 예방 기술 상담소 운영, 화학공장 지도·감독계획 등 업무내용을 홍보하며, 관계법령·기준·기술자료, 화재·폭발·누출 등 중대산업사고사례, 교육자료, 국내·외 관련기관 동향정보 등을 제공한다.

(3) PSM 대상 사업장 차등관리 강화

PSM 이행수준평가를 받아 등급이 부여된 사업장을 대상으로 P등급, S등급, M등급으로 구분하여 차등 관리한다.

- P등급 : 노·사 협력하에 PSM 자율이행, 각종 지도·점검 면제 또는 자율 실시, 정부포상업체 선정시(화학분야) P등급 업체에서 선발·추천
- S등급 : 연 1회 중대산업사고 예방 및 PSM 이행실태 점검

※ 당해 연도에 PSM 이행수준평가를 실시한 경우에는 이행수준 평가시 지적된 사항 위주로 확인점검 실시

- M등급 : 연 2회 이상 중대산업사고 예방 및 PSM 이행실태 점검, 반기별 PSM 관계자(사업주 포함) 교육, 안전공단에서 기술지도 집중 실시

※ PSM 대상 사업장 중 심사·확인이 완료되었으나 특별한 사유 없이 등급이 부여되지 않은 사업장은 M등급으로 관리

(4) PSM 사업장 이행수준 평가

공정안전보고서 심사·확인이 완료된 사업장에 대하여 이행상태를 평가하여 차등관리 등급을 부여하기 위하여 정기, 신규, 재평가 등으로 구분하여 실시한다.

- 정기평가 : 2002년도에 이행수준평가를 받아 차등관리 등급이 부여된 P 또는 S등급 사업장
- 신규평가 : 2005년도 현재 공정안전보고서 심사 완료 사업장
- 재 평가 : 등급이 부여된 사업장 중 평가를 희망하는 사업장

※ 이행수준평가 후 1년 이내(P등급 사업장이 M등급으로 수시선정된 경우 6개월 이내) 재평가 제한

(5) PSM 비대상 화학물질 취급업체 공정안전 기술지원

PSM 적용대상이 아닌 중소규모 화학물질 취급 사업장에 대하여 화재·폭발 등 사고예방 기술을 지원하기 위해 안산 시화·반월공단, 인천 남동공단, 평택 포승공단 등 중소규모 화학공장 밀집지역 소재 사업장을 대상으로 유해·위험시설에 대한 위험성 평가 예방대책을 제시해 주고 대규모 화학공장의 협력업체를 대상으로는 화재·폭발 방지 교육 및 PSM 관련 교육을 지원

한다.

(6) 공정안전보고서 이행풍토 조성

공정안전관리(PSM) 12대 실천과제를 보급하고 공정안전문화 측정기법을 개발·보급한다.

※ PSM 12개요소

- ① 공정안전자료 ② 위험성평가
- ③ 안전운전지침서 ④ 설비점검검사보수유지계획
- ⑤ 안전작업허가 ⑥ 도급업체관리
- ⑦ 근로자교육 ⑧ 가동전점검
- ⑨ 변경요소관리 ⑩ 자체감사
- ⑪ 사고조사 ⑫ 비상조치계획

또한 사업장 스스로 조직의 공정안전문화 수준(PSM Maturity)을 측정하고 취약점을 발굴·개선토록 유도키 위하여 국내 PSM 사업장 실정에 적합한 『공정안전문화 측정프로그램』을 개발하여 보급한다.

(7) 공정안전관리(PSM) 이행수준평가 매뉴얼 작성

현재 3개 분야(면담, 문서관리, 현장확인)로 구성되어 있는 평가표를 재검토하여 5~10개 분야로 세분화하고 120개 평가항목을 보다 구체화하여 항목을 추가하며 개인별 편차를 최소화하기 위해 이행수준 평가반 구성·평가 절차·사후관리 업무 매뉴얼을 작성한다.

(8) 종합위험관리체제(IRMS) 운영체제 개선·보급

사업장에서 IRMS를 쉽게 활용할 수 있도록 프로그램 기능 개선, D/B에 입력된 자료를 최신자료로 유지하기 위한 방안수립 등 IRMS의 신뢰성 제

고를 위한 성능개선을 지속 추진하고 사업장 IRMS 구축 지원체제를 대폭 개선하여 사업장 IRMS 전문가를 양성한다.

(9) 공정안전관리(PSM) 제도개선 추진

PSM 제도의 효과성을 높이기 위해 현행 공정안전보고서 제출·심사·확인·이행제도 전반을 재검토하고 관련규정 개정을 추진한다.

- 도시가스사용시설에 대해서는 EU 또는 미국 기준을 『적용대상』으로 하는 방안 검토
- 외국에 비해 미흡한 수준인 『적용대상 물질의 종류』를 선진국 수준으로 확대

마. 재난관리체계 구축

(1) 산업재난대책 추진체제 확립

재난및안전관리기본법에 근거하여 각종 재난 및 재해발생시 신속한 대응체제를 구축하여 사업장의 근로자를 보호하기 위하여 산업재난 추진체제를 확립한다.

(2) 재난관리 대상 사업장 관리

재난및안전관리기본법에 근거하여 재난발생 위험시설 보유사업장을 관리하되 기존 사업과의 중복을 최소화하는 사업장관리를 한다.

- 위험사업장(E등급) : 분기 1회 이상 점검, 점검결과 조치 확인
- 불량사업장(D등급) : 반기 1회 이상 점검, 점검결과 조치 확인
- 보통사업장(C등급) : 안전공단에서 연 1회 기술지도 실시

※ 안전공단으로부터 기술지도 결과를 제출받아 개선여부 확인

- 우수·양호사업장(A·B등급) : 사업장 자율 관리

- ※ 이상의 기준에 불구하고 지방관서장이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경우 수시점검
- ※ 점검결과 필요시 안전보건진단 및 안전보건개선계획수립 명령

바. 철도산업 안전보건 이행실태 점검

연도별 산업재해 발생현황, 안전투자 규모 및 실적, 안전조직 설치 및 운영, 산업안전보건위원회 구성 및 운영, 산업안전보건활동 등 일반 사항, 유해·위험설비 법정·자체검사, 철도안전기준 이행, 작업장 안전보건관리체제 등 안전상의 조치 이행실태 및 건강진단·작업환경측정 등 보건관리에 관한 사항 등에 대하여 본청(사) 및 현업사무소를 방문하여 점검을 실시하되 안전보건관리 추진체계(본청), 입환작업(역), 선로작업(시설사무소), 전기작업(전기사무소), 건설작업(건설사무소) 등을 중점 점검한다.

3. 작업환경관리와 근로자 건강증진 활성화

가. 유해인자 관리의 체계화 및 강화

(1) 작업환경 유해인자별 차등관리

(가) 감독관 책임관리

작업환경측정결과 화학적 유해인자(분진 제외)가 노출기준을 초과한 사업장(측정시기 : 2004 하반기, 2005 상·하반기) 및 안전공단의 유해인자별 중점관리 대상 사업장 중 작업환경 또는 시설개선 요구에도 불구하고 개선 미비로 근로자의 건강장해가 심각히 우려되어 지방관서에 감독관 책임관리 대상으로 변경을 요청한 사업장을 대상으로 50인 이상 사업장은 지방청별로 대상 사업장 규모에 따라 2~5명의 감독관으로 『책임관리점검팀』을 구성하여 점검(시정 또는 개선명령)을 실시하고, 그 외 사업장은 해당 관할 지방관서에서 점검한다.

(나) 유해인자별 중점관리

측정결과 소음·분진 등 재래형 유해인자가 노출기준을 초과한 사업장, 석면, 벤젠 등 관리대상 유해인자 보유 사업장, 밀폐공간 위험작업 보유 사업장, 사무실 공기질 관리가 필요한 사업장, 기타 안전공단 지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장을 대상으로 CLEAN 사업과 연계하여 시설개선 유도, 청력보호프로그램, 호흡기보호프로그램 및 밀폐공간보건작업프로그램 지도 등을 기술 지원한다.

(다) 작업환경 모니터링

직업병요관찰자(C₁) 다수발생 사업장, 재측정을 실시한 사업장 등 작업환경이 불량(의심)하거나 측정결과 등으로 사회적 물의 또는 노사간 갈등을 야기한 사업장 등은 가능한 한 불시방문을 통한 작업환경측정을 실시하고 적정성 여부를 점검한 후 필요시 행정조치한다.

(2) 화학물질의 체계적 관리

(가) 유해·위험성 평가

국내 사용량 또는 취급 근로자 수가 많은 화학물질 중 중독성이 강한 것으로 예측되거나 국내외 연구자료가 없는 물질에 대해서 유해·위험성 평가를 실시하고 평가결과에 따라 법상 관리대상물질로 분류하고 체계적으로 관리한다.

(나) 유해물질의 노출기준 보완

미제정 또는 불합리한 노출기준을 우리나라 실정(근로시간, 작업환경 등)에 맞도록 유해물질의 노출기준을 제·개정한다.

(다) 물질안전보건자료(MSDS) 신뢰성 강화

감독관 책임관리, 작업환경 모니터링 등 각종 지도·점검 사업장을 대상으로 MSDS 이행실태 현

장점검을 병행 실시하고 범위반시 시정지시 또는 세부내용 변경을 명령·조치한다.

(라) 화학물질 분류·표시 국제통일기준(GHS) 도입

UN의 화학물질 유해성 분류 및 경고표시 통일 기준(GHS) 도입을 위하여 관계부처와 공동작업을 추진한다.

화학물질 분류·표시 국제통일기준(GHS)

- 화학물질 취급자에게는 정확한 정보를 제공하는 한편 각국의 무역장벽 완화를 위해 전세계적으로 통일된 유해·위험성 정의 및 분류기준을 가지고 통일된 형식으로 경고표지 및 물질안전보건자료(MSDS)를 작성하여 정보를 전달하는 시스템
- ※ GHS(Globally Harmonized System for classification and labelling of chemicals) : UN 주도로 2008년까지 전세계 도입을 목표로 추진 중에 있음.

(3) 금지 및 허가물질 불법취급 근절

(가) 금지 및 허가물질 불법취급 의심 사업장 집중점검

2004년 제조업체 작업환경실태조사결과 금지 및 허가물질 불법취급 의심 사업장을 대상으로 사업장에 대한 점검을 실시하고 당해 물질을 다른 사업장에 판매하였을 경우 반드시 추적·조사하고 구매한 사업장이 관외에 소재한 경우 관할 지방관서에 통보한다.

(나) 미허가 석면 해체·제거 건축물 불시점검

매분기마다 관할 시·군·구의 건축물 해체신고 접수 현황을 파악하여 불시점검 실시한다.

※ 건축법 제27조 : 건물주는 건축물 해체 7일전까지 관할 시·군·구에 의무적으로 신고

나. 직업병 예방의 효율적 추진

(1) 고소음 사업장 작업환경개선 지도·지원

(가) 고소음 사업장 감독관 집중지도·지원

작업환경측정결과 소음이 노출기준을 초과한 사업장 및 소음성난청 직업병자 또는 직업병 유소견자 발생 사업장(소음수준이 100dB 초과 또는 소음성난청 직업병자 2명(소음성난청 유소견자 5명) 이상 사업장 우선 선정)은 담당 감독관을 지정하여 전담관리하되 가급적 시설개선을 위한 자금 지원 사업대상으로 유도한다.

(나) 고소음 사업장 DB 구축·관리

소음 노출기준(90dB) 초과 사업장은 사업장 정보를 DB로 구축·관리하고 감독관 고소음 사업장 집중지도, 안전공단 중점관리 지도, 컨설팅 및 시설개선자금지원 가능 사업장으로 구분하여 관리한다.

(2) 특수건강진단 및 작업환경측정·관리 제도 개선

(가) 작업환경측정 및 특수건강진단의 연계를 통한 종합서비스 제도화

근로자에 대한 통합적 보건관리를 통한 산업보건 서비스의 효율적 지원체제를 구축하기 위하여 측정·검진 등 업무의 통합 수행을 통한 서비스의 효율성 향상을 위한 제도적 방안을 마련한다.



(나) 유해인자별 특수건강진단기준 확립 및 하위규정 정비

시행규칙 개정에 따라 추가되는 유해인자 58종에 대해 특수건강진단시 직업병유소견자, 요관찰자 판정 기준 등을 마련한다.

(다) 특수건강진단 지정의사 연수교육

특수건강진단기관 지정의사를 대상으로 전문성을 높이기 위해 안전공단, 한국특수건강진단협회와 연계하여 교육을 실시한다.

(라) 건강진단 및 작업환경측정 통계 기반 조성

작업환경측정결과 통계는 사업장으로부터 제출되는 작업환경측정결과표를 안전공단이 전산입력하고, 일반건강진단결과는 국민건강보험공단의 건강검진 전산입력자료를 제출받고 특수건강진단결과는 특수건강진단기관의 전산입력자료를 전송받아 통계 분석한다.

(마) 유해인자별 건강관리지침서(3종) 개발·보급

2004년도 카드뮴, 노말렉산, 망간 등 3종의 유해인자별 건강관리지침서 개발·보급에 이어 크롬, 베릴륨, 트리클로로에틸렌 등 3종에 대해 건강관리지침서를 개발·보급한다.

(바) 건강진단 및 작업환경측정 홍보 강화

근로자건강진단 및 작업환경측정 실시안내를 신문에 공고하고 작업환경측정 및 특수건강진단 안내 책자를 발간하며 작업환경개선 우수시설업체를 육성 지원한다.

(사) 건강진단 및 작업환경측정 내실화

건강진단 실시여부는 노동부에서 사업장 점검·감독시 당해 사업장의 건강진단 실시여부를 점검

하되 상기 점검·감독에서 제외되는 관내 100인 이상 사업장에 대하여는 9월 중 자체계획을 수립하여 건강진단 실시 여부를 별도 점검한다. 또한 직업병유소견자에 대해서는 사후관리조치 이행의 철저 및 건강관리수첩 관리를 강화하며, 건강장해 예방프로그램 이행여부를 지도·점검한다.

또한 작업환경측정대상 사업장의 발굴 및 측정 실시 주기 준수여부에 대해 지도감독을 강화하고 측정대상 물질 및 공정의 누락방지와 작업환경측정 및 정도관리규정에서 정한 측정방법을 준수토록 지도하며 근로자대표, 명예산업안전감독관 등이 측정시 참여토록 한다. 아울러 근로자대표 등의 요구가 있는 경우 측정결과에 대한 설명회를 개최토록 지도한다.

(아) 발암성물질 취급 근로자의 건강보호

건강관리수첩 교부 대상 유해인자를 11종에서 14종으로 확대하고 신규 추가 유해인자 관련 업무에 종사한 근로자 파악 및 건강진단 등 체계적인 관리체계를 구축한다.

(3) 작업환경측정기관 및 특수건강진단 기관의 신뢰도 제고

(가) 작업환경측정기관 및 특수건강진단기관 점검·평가

작업환경측정기관(116개소) 및 특수건강진단기관(105개소)를 대상으로 점검표 및 평가표에 의한 작업환경측정기관 및 특수건강진단기관의 실태를 확인 및 점검·평가한다.

(나) 특수건강진단 사업장 점검

특수건강진단 사업장 250개소 중 취약 사업장을 반기별로 1개소씩 선정하여 특수건강진단 검사 항목 누락 여부 및 무면허 또는 지정기준에 미달하는 의사의 건강진단 여부, 건강진단비용 부당

징수 여부, 건강진단개인표 허위 작성, 허위 판정 등 특수건강진단의 적정성 여부 등을 점검한다.

다. 근로자 평생건강관리체계 기반 구축

(1) 근로자의 일반건강진단 실시 제고

(가) 일반건강진단 통합 실시안내

(나) 일반건강진단 미실시 사업장(근로자) 실시 독려

(다) 일반건강진단 실시결과 DB 구축·관리

(라) 직업성질환 감시체계 구축·운영

(2) 직업관련성 근골격계질환(이하 “근골격계질환”) 예방 조기정착 유도

(가) 근골격계질환 예방 기술지원

근골격계질환 다수발생 업종 또는 근골격계부담작업을 보유한 1,000인 미만 사업장을 대상으로 잠재된 유해요인에 대하여 그 특성에 따른 교육·훈련, 설비개선 및 작업관리 등 종합적인 예방기술지원을 실시하고 그 이행여부를 추적관리하며 지방관서의 요청이 있거나 필요성이 인정되는 대상사업장에 대하여는 보유 유해 공정·작업에 대한 비디오 촬영을 통한 작업분석 및 정밀평가 후 종합적인 예방기술지원을 실시하고 그 이행여부를 추적 확인한다.

(나) 노·사 협력적 근골격계질환 예방활동 재정지원

노·사 협의에 의해 근골격계질환 예방관리프로그램을 시행하고 있거나 시행하고자 하는 50~299인 사업장을 대상으로 재정지원사업을 시행하며 보조금은 인간공학적 작업환경개선에 소요되는 비용의 50% 범위 이내에서 최고 3,000만원까지 지원한다.

※ 50인 미만 사업장의 인간공학적 작업환경개선은 CLEAN 사업으로 지원

(다) 근골격계질환 예방관리프로그램 전문 컨설팅 제공

근골격계질환 예방관리프로그램을 시행하고 있거나 시행하고자 하는 사업장이 신청한 예방관리프로그램에 대하여 “사업장 근골격계질환 예방관리프로그램(KOSHA CODE H-31-2003)”을 중심으로 한 정성적·정량적 심사·평가 후 미비점에 대한 개선방안 제시 등 업종·규모 등을 고려한 전문컨설팅을 실시한다. 또한 근골격계질환 다수발생 업종 사업장에 대하여는 해당 업종의 예방관리프로그램 운영매뉴얼을 제공한다.

※ 운영 매뉴얼(5종) : 조선업, 자동차제조업, 자동차부품제조업, 기계기구제조업, 전자제품제조업

(라) 사업장 근골격계질환 예방의무 이행점검

2004. 11월 이후 근골격계질환 발생사업장이나 100인 이상 근골격계부담작업 보유사업장 및 기타 점검의 필요성이 인정되는 사업장 등을 대상으로 근골격계질환 예방의무 이행여부를 점검한다.

(마) 근골격계질환 예방 간담회 운영

사업장의 예방활동 현황파악, 사업장의 애로사항 의견수렴, 사업장의 예방의무 이행지도 등을 위하여 지방관서장 주관으로 반기별 1회 이상 노·사가 참여하는 근골격계질환 예방 간담회를 개최하고 근골격계질환 예방 전문위원회를 운영한다.

(바) 근골격계질환 예방 전문요원 양성

중·소규모 사업장의 근골격계질환 예방활동을 직접 수행 또는 지원할 수 있는 전문요원 육성을 위하여 사업주, 보건관리자, 관리감독자 및 근로자를 대상으로 지역별·업종별 특성을 감안한 참가형 개선활동 전문요원 양성교육을 실시한다.

(사) 근골격계질환 예방 기술자료 개발·보급 및 연구

근골격계질환 예방관리 운영매뉴얼(5종), 의료기관의 환자운반지침 및 수공구작업관리지침 등 기술자료를 개발·보급하고 육가공업 등 근골격계질환 위험업종·작업·직종 등의 근골격계질환 예방실무지침 개발을 위한 연구용역 등을 실시한다.

(아) 근골격계질환 예방 전용 홈페이지 운영 내실화

근골격계질환 예방관련 콘텐츠의 지속적인 갱신 등 국내외 각종 정보·자료의 최신성 및 정확성 유지를 위하여 현재 개설되어 있는 근골격계질환 예방 전용 홈페이지(<http://msd.kosha.net>)의 콘텐츠 양과 질을 지속적으로 제고한다.

(3) 작업관련성 뇌심혈관질환(이하 “뇌심혈관질환”) 고위험 사업장 예방 기술지원

(가) 뇌심혈관질환 고위험 사업장 DB 구축·관리

건물관리업 등 뇌심혈관질환 및 선행질환(고혈압, 고지혈증, 당뇨병 등) 10대 다발업종 사업장(17,500개소)을 대상으로 집체교육, 사내교육, 강사지원, 각종 기술자료 보급 등 밀착 예방·관리한다.

(나) 뇌심혈관질환 예방 기술지원

뇌심혈관질환 고위험 사업장(17,500개소) 중 선행질환 다수발생 사업장(2,000개소)을 대상으로 전문인력을 대상사업장에 방문하여 건강증진, 건강상담, 뇌심혈관질환 예방교육, 혈압, 체지방 등 간이검사, 고혈압, 고지혈증, 당뇨병 등 선행질환 사후관리, 직무스트레스 평가 및 지도 등 기술지원을 실시(사업장당 연 4회 방문) 한다.

(다) 직무스트레스 및 뇌심혈관질환 예방 의무 이행지도

뇌심혈관질환 발생사업장(최근 3년간) 및 고위험사업장이나 보건관리자 선임대상 사업장으로 장시간 근로, 야간작업, 교대작업, 차량운전, 정밀기계의 조작·감시작업을 행하는 사업장, 기타 지방관서의 장이 예방지도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업장 등을 대상으로 직무스트레스 및 뇌심혈관질환 예방 의무가 이행되도록 지도한다.

(라) 직무스트레스 및 뇌심혈관질환 예방 교육 확대

업무상 뇌심혈관질환 발생사업장 및 고위험사업장 등의 사업주, 보건관리자, 관리감독자 및 근로자를 대상으로 직무스트레스 및 뇌심혈관질환 예방 교육을 실시한다.

(마) 뇌심혈관질환 등 예방 전용코너 운영 내실화

직무스트레스 및 뇌심혈관질환 예방에 필요한 지식, 정보 및 자료 등에 대한 사업주 및 근로자의 이용성 및 편의성 제고를 위하여 안전공단의 자체 홈페이지에 직무스트레스 및 뇌심혈관질환 예방 전용코너를 내실화하여 뇌심혈관질환 발병위험도 자체평가서비스 및 각종 관련 법규, 기준, 지식, 정보, 자료 등을 제공한다.

(4) 사업장 건강증진사업 활성화

(가) 건강증진사업 전국실태조사

근로자 건강증진의 효율적인 정책수립 및 사업개발을 위한 기초자료를 확보하기 위하여 전국 실태조사를 실시한다.

(나) 건강증진사업 시행사업장 전문 컨설팅 제공

근로자 건강증진사업을 시행하고 있거나 시행하고자 하는 사업장을 대상으로 연중 수시로 근로자 건강증진에 관한 전문컨설팅 및 기술지원을 실시한다.

(다) 건강증진사업 우수사례 발굴·보급

발표대회를 통한 규모별 근로자 건강증진사업 우수사례의 확산을 도모하기 위하여 근로자 건강증진사업 시행사업장 중 우수사례 발표대회를 개최하고 근로자 건강증진사업 우수사례집을 발간하여 홍보·보급한다.

(라) 근로자 체력측정 및 운동처방 지원

운동지도 등을 통한 근로자 건강의 유지·증진을 위하여 체력측정장비 대여 신청사업장에 대하여 연중 수시로 체력측정장비를 대여하고 운동처방사 등 전문인력 지원, 체력측정실 방문근로자에 대해서는 직접 체력측정 및 운동처방을 제공한다.

라. 진폐근로자 보호사업의 효율적 추진

(1) 진폐근로자 보호사업의 효율화

(가) 진폐건강진단 실시

- ① 정기, 임시, 이직자 건강진단 실시지도
- ② 진폐건강진단 절차 확립

(나) 진폐관리 구분판정 및 재심사 청구

- ① 진폐관리 구분판정 사후조치
- ② 진폐관리 구분판정에 이의가 있는 자는 재심사 청구

(다) 진폐관리카드 및 건강관리수첩 발급 등

- ① 진폐관리구분 제1종~제4종의 판정 받은 자를 대상으로 건강관리수첩 발급
- ② 정기·임시 또는 이직자 건강진단을 실시한

자에 대하여 건강관리카드 작성 및 관리

③ 진폐관리 전산망의 관리

(라) 건강진단기관 지도·점검

지방관서가 지정한 진폐건강진단기관을 대상으로 인력·장비 등 운영의 적정 여부, 건강진단 검사항목 및 결과, 건강진단비용 청구내역, 정도관리 실시 결과 등을 지도·점검한다.

4. 노·사의 안전의식 및 자율적 예방 활동 강화

가. CEO의 안전의식 제고

(1) CEO 안전경영교육 활성화

- (가) 「산업안전보건정책 간담회」 개최
- (나) 「CEO 안전보건 연찬회」 개최
- (다) CEO용 안전보건 교재 및 자료 개발·보급

(2) 산재예방관리 불량 사업장 명단 공표

(가) 중대재해 발생 및 산재다발 등 산재예방관리가 불량한 사업장의 명단 공표

- ① 공표대상
중대재해 발생 사업장, 중대산업사고 발생 사업장, 산재다발 사업장, 산재은폐 사업장
- ② 공표내용
사업장명, 사업장 주소, 재해율 또는 중대재해(중대산업사고) 발생건수
- ③ 공표방법
관보, 일간신문, 인터넷

(나) 공표의 실효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각 공표대상별로 공표시기를 구분하되, 공표주기 정례화(4월·10월)

- ① 4월
중대재해 발생사업장, 중대산업사고 발생사업장, 산재다발 사업장, 산재은폐 사업장
- ② 10월

중대재해 발생사업장, 중대산업사고 발생사업장

(3) 법 미준수자에 대한 조치 강화

(가) 안전보건 감독

감독결과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안전보건 개선계획 또는 안전보건진단 명령을 병행하되 산업재해조사와 병행하여 감독을 실시한 경우 각각의 범위반사항을 병합하여 행정·사법 처리한다.

(나) 검찰 합동점검

연2회 검찰과 합동 점검을 실시하고 법령 위반 시 산업안전감독관집무규정 제36조의 규정에 의한 감독시 조치기준에 준하여 즉시 과태료를 부과한다.

(다) 반복적 법 위반 사업주 조치 강화

안전보건교육 미실시, 작업환경측정 미실시, 물질안전보건자료 미비치·게시 등 반복적 법 위반 사업주에 대해 시정조치 없이 즉시 과태료 부과를 확행한다.

(라) 보호구 미착용 근로자 과태료 부과

각종 점검·감독시 사업주가 보호구를 지급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안전모, 안전화, 안전대를 착용하지 않아 법 제25조(근로자 준수사항) 위반으로 적발된 근로자에게는 과태료를 즉시 부과한다.

나. 노·사의 산재예방활동 참여 및 기반 강화

(1) 산업안전보건위원회 운영 활성화

(가) 산업안전보건위원회 운영 개선

산업안전보건위원회를 노사협의회와 별도로

설치·운영하는 대상 사업장 확대를 추진하고 산업안전보건위원회 심의사항 확대를 검토·추진한다.

(나) 산업안전보건위원회 운영 활성화 지원

산업안전보건위원회 운영 우수사례 발표대회 개최 및 우수사례를 보급·전파하고 산업안전보건위원회 노·사위원의 전문성 및 커뮤니케이션 기법 등의 제고를 위한 「산업안전보건위원회 세미나」 과정을 개설·운영한다.

(다) 산업안전보건위원회 운영 지도·점검

각종 사업장 점검·감독시 산업안전보건위원회 설치·운영실태 등을 확인하고 운영 활성화를 지도한다.

(2) 명예산업안전감독관 활동 지원

명예산업안전감독관 활동 활성화 및 명예산업안전감독관 활동 지도 및 협의회 운영 등을 통하여 지원한다.

(3) 안전·보건·환경·품질(SHE-Q) 통합경영시스템 개발

현재 사업장에서 적용하고 있는 ISO 9000(품질), ISO 14000(환경), OSHAS 18001(안전·보건) 등 SHE-Q의 운영실태를 파악하고 각 분야별 경영체제의 특성을 분석, 국내 사업장의 특성이 반영된 통합경영모델을 개발한다.

【 SHE-Q 】

SHE-Q(Safety, Health, Environment & Quality) 통합관리 시스템이란 사업장에서 안전(S)·보건(H)·환경(E)·품질(Q)을 각각 관리할 때 나타나는 조직·인력·예산의 중복 등 비효

을성을 제거하고 지속적인 개선 활동을 통하여 안전보건을 확보할 수 있도록 3개 분야 관리 체제를 통합한 경영체제를 말한다.

(4) 사업장의 안전보건경영시스템(OSHMS) 인증 강화

중소기업, 건설업 등 산재취약 분야의 인증을 촉진하고 인증업무 절차 개선, 평가요원의 능력제고 등 인증평가의 질 향상 및 인증사업장의 사후관리를 내실화한다.

(5) 민간 안전보건전문가 육성 및 활동 활성화

검사·검정 등 시험업무에 안전공단외 공인시험기관 참여를 제도화하고 사업장, 특히 중소기업 사업장의 안전보건 진단·대책 및 교육 등에 대한 민간전문가의 기술지원·자문·상담 등의 활성화를 위한 기반을 적극 조성한다.

(6) 산업재해 발생 미보고 방지

건강보험부당이득금 환수자 조사 및 소방본부(119구급대) 신고재해 조사, 근로복지공단에 제출된 요양신청서 중 ① 요양신청서 반려요청을 통해 반려된 재해, ② 산재발생 후 1개월을 초과하여 요양신청서를 제출한 재해 조사 등을 통하여 미보고 및 보고기한 초과 여부를 조사한다. 또한 산재발생 미보고 신고센터 및 산재발생 미보고 자진신고기간을 운영한다.

※ 「산재발생 미보고 자진신고기간」 (매분기 마지막 월의 1~7일) 설정 및 동 기간내 자진신고자에 대해서는 사법처리 유보

(7) 지방관서별 자체 산재예방사업 추진

재해감소에 직접적으로 효과가 있는 사업을 위주로 업종분포, 지역 특성 등을 감안하여 자체 산재해 예방사업을 추진한다.

(8) 과태료 부과·징수의 효율화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사업주 및 근로자에 대해서는 엄정한 법 집행으로 과태료를 부과하고 부과된 과태료에 대해서는 미납 및 불손처리되는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한다.

(9) 『산업재해감소협의회』 구성·운영

지역특성을 감안한 산업재해감소 목표·대책수립 및 재해예방기관간 상호 정보교환과 산업재해감소를 위한 협조체제 확립을 위하여 산업재해감소협의회를 구성하고 반기 1회 이상의 정기회의 및 필요시 수시회의를 개최한다.

다. 안전문화 조성·확산

(1) 사업장 안전문화 조성

- (가) 매월 4일 「안전점검의 날」 운영
- (나) 「산업안전보건강조주간」(7. 1~7. 7) 운영
- (다) 산재예방유공자 포상
- (라) 「안전경영대상」 시상

(2) 평생 안전교육체계 구축

- (가) 초기 안전교육용 교재 개발·보급
- (나) 학교 안전교육 지원
- (다) 범국민 안전의식 고취 

